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용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Maulmandulgi Regulations

- Focusing on Japanese and Korean Maulmandulgi Ordiances -

문 채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 주저자)

Abstract

Moon Chai

Maulmandulgi Projects have recently replaced the traditional urban renewal tools,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s, which have been facing their limitations in Korea. Several local government lik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won City, Cheongju City have introduced the ordinances for Maulmandulgi Projects.

Japan has long been employing Maulmandulgi institutions for urban renewals.

Then, this paper suggests the distinctive, diverse and citizen-led operations of Maulmandulgi ordinances that may have be based on the identities of each city.

주제어: 마을만들기 제도, 마을만들기 조례, 운용특성, 한국, 일본

Keywords: Maulmandulgi Institutions, Maulmandulgi Ordinance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Korea, Japan

* 본 논문은 2013년도 성결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국토환경지속성포럼의 연례 컨퍼런스(2012.11.24. 서울시립대학교) 발표자료인『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및 향후 운영방향』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마을만들기가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흐름과 함께 행정에서도 서울특별시나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 행정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마을만들기의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등 마을만들기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의 보완수단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에서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새로운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등 그 방향성의 혼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또한 마을만들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인 마을만들기 조례를 중심으로 제도 속에서 정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이나 제도적 운용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마을만들기 근거법령인 마을만들기관련 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사례대상 도시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조례를 모두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분석내용은 마을만들기 유래 및 개념, 마을만들기 제도의 현황, 마을만들기 제도의 내용구성,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용특성 등 4가지 측면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최근의 활발한 마을만들기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들 마을만들기관련 선행연구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의 특성이나 조직운영 등을 분석한 마을만들기 평가에 관한 연구, 마을만들기 정비방안 등 마을만들기 방법론에 관한 연구,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마을만들기 제도개선방안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마을만들기 평가에 관한 연구는 가장 많이 수행된 분야인데, 이규선 등(2012)에 의한 "청주시 사직2동 마을만들기 단계별 특성연구"는 재개발구역이었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단계(도입기, 형성기, 발전기)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김진경 등(2012)에 의한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연구"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학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용효과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향후 마을르네상스 학교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세훈 등(2009)에 의한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 비교분석"은 서울 북촌과 광주 북구 문화동을 대상으로 제도주의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분석하였으며, 송혜승 등(2008)에 의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는 광주시 북구 문화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시 이러한 평가지표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원식 등(2008) 등에 의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체 및 추진주체 분석"은 49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주제와 사업주체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분류기준별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을만들기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는 이창호 등(2007)에 의한 "대학주도의 대학마을 재정비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주변지역과 연계된 재정비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마을 재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을만들기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김용성 등(2012)에 의한 "협의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가 있는데, 도쿄 세타가야구와 광주 북구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적, 제도적, 주민참여적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사례를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평가하거나 방법론을 분석한 연구로서, 마을만들기의 근거법령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일본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1. 마을만들기 유래 및 개념

1) 마을만들기 유래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까

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이와 같은 관주도의 지역개발은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하였다(장준호 외, 2010). 그런데 이 와중에 지자체선거에서 당선된 혁신적인 자치단체장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을만들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흐름과 함께 도시계획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전국 각지에서 개발이란 미명아래 일어나 무질서한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환경 중시 도시계획과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참여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점점 인식되었으며, 이것이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마을만들기 수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일본의 만들만들기 제도 속의 마을만들기 개념

마을만들기 용어	마을만들기 정의	관련 사례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토시마구내에서 시가지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을 말함	· 도쿄도 토시마구 마을만들기추진조례(2003.3)
풍경만들기	"풍경만들기"란 "지역의 개성이 넘치는 세타가야다운 풍경을 지키고 가꾸고 만드는 것"을 말함	· 도쿄도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조례(1999.3)
가구재편마을만들기	"가구재편마을만들기"란 "가구마다 그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분화된 부지의 통합이나 좁은 도로의 교체, 가구의 미이용· 저이용토지와 주변과의 일체적 개발(이상, 가구재편)에 의해 시가지의 계획적인 재편정비를 진행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매력이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街並み)만들기 추진조례(2003.3)
시가지(街並み)경관만들기	"시가지(街並み)경관만들기"란 "시가지(街並み)경관을 보전하거나 수복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말함	·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추진조례(2003.3.)
복지마을만들기	"복지마을만들기"란 "장애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연대 이념에 따라 상호 교류를 하고 서로 협력하여 복지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환경의 정비"를 말함	· 삿포로시 복지 마을만들기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2007.12)
범죄없는 안전하고 안심한 지역만들기	"범죄없는 안전하고 안심한 지역만들기"란 "도민이나 사업자, 관계단체 등에 의해 범죄방지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 도·시정촌 및 도민 등에 의한 범죄방지에 배려한 생활환경 정비나 기타 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말함	· 홋카이도 범죄없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지역만들기 조례(1998.12)
안심하여 오	"안심하여 오래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별	· 사이타마시 누구라

래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도의 용어 정의는 없음	도 안심하여 오래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2012.3)
방범마을만들기	"방범마을만들기"에 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음	・사이타마현 방범마을만들기 추진 조례(2004.3)
진재예방마을만들기	"진재예방마을만들기"에 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음	・사이타마현 진재예방마을만들기 조례(2002.3)
방재도시만들기	"방재도시만들기"란 "진재예방과 진재발생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시설 등에 대해 내진성 및 내화성을 확보하는 조치나 기타 도시구조의 개선에 관한 조치"를 말함	・도쿄도 진재대책 조례(2000.12)

출처: 東京都豊島區(2003.3), 東京都世田谷區(1995.3), "世田谷區街づくり條例", "豊島區街づくり推進條例", 東京都世田谷區(1999.3), "世田谷區風景づくり條例", 東京都(2003.3), "東京のしゃれた街並みづくり推進條例", 北海道札幌市(1998.12), "札幌市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 北海道(2005.3), "北海道犯罪のない安全で安心な地域づくり條例", 埼玉縣さいたま市(2012.3), "さいたま市誰もが安心して長生きできるまちづくり條例", 埼玉縣(2004.3), "埼玉縣防犯のまちづくり推進條例", 埼玉縣(2002.3), "埼玉縣震災予防のまちづくり條例", 東京都(2000.12), "東京都震災對策條例"

2) 마을만들기 개념

일본은 마을만들기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어 학술적으로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주민의 삶의 터전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마을만들기란 "특정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행정과 전문가, 각종 중간섹터, 민간섹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소프트한 것과 하드한 것이 일체가 된 주거환경의 향상을 지향하는 활동의 총체(佐藤滋, 1999)"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상의 마을만들기 개념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관련 조례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일본의 마을만들기관련 정의를 보면 도쿄도 토시마구와 같이 "마을만들기"라는 단일 개념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1] 그 밖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라는 단일 개념의 용어 정의 대신에 풍경만들기, 가구재편마을만들기, 시가지(街並み)경관만들기, 복지마을만들기, 안전하고 안심한 마을만들기, 방범마을만들기, 진재예방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경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는 아니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음

2. 일본 마을만들기 제도의 현황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단일 형태로 운영되기보다 이슈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제도를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①마을환경개선형, ②경관형성형, ③복지조성형, ④재해예방형, ⑤안전관리형 등의 5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마을만들기 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류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다카미자와 미노루(高見澤實)는 ①역사적 시가지보전・경관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 ②개발 컨트롤이나 토지이용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 ③자연환경 보전・창조를 목적으로 한 것, ④지구계획・지구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것 등의 4가지로 분류[2]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5가지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1) 마을환경개선형

이 유형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전반적인 마을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로 마을만들기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유형으로서, 마을만들기의 내용도 도시정비방침의 수립이나 분야별정비방침의 수립, 지구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지구계획안의 작성, 도시계획 운용의 지원 등 기존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의 경우, 2003년에 새로이 제정한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조례"에서 도시계획법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있어 이 유형은 여전히 도시계획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로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1982.6 제정), 고베시 지구계획 및 마을만들기협정 등에 관한 조례(1981.12 제정), 효고현 마을만들기 기본조례(2000.3 제정),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조례(2003.3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

2) 佐藤滋, 「まちづくりの科學」, 鹿島出版會, 1999.9, pp285-286

〈표 2〉 마을환경개선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구의 책무, 구민 등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마을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조정
2장 마을만들기에 관한 방침 등의 책정	1절 도시정비방침 등의 책정 - 도시정비방침의 수립, 수립 절차, 분야별 정빙방침의 수립 2절 지구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 지구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수립절차, 공람 등, 수립 변경시의 준용 3절 지구계획 등의 안 작성 - 지구계획 등 안 작성절차, 지구계획 등 원안 제안방법, 의견의 제출방법, 지구계획 등 초안의 신청,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 4절 마을만들기 유도지침의 수립 - 마을만들기 유도지침의 수립
3장 마을만들기의 추진 등	1절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 지구 마을만들기사업 2절 마을만들기 유도지구 - 마을만들기 유도지구의 지정, 건축행위 등의 유도 3절 마을만들기 추진지구 - 마을만들기 추진지구의 지정, 지정기간, 공공공익시설등의 정비의 촉진
4장 양호한 건축구상의 유도	1절 대규모 토지거래행위의 신고 등 - 대규모 토지거래행위의 신고, 마을만들기방침 등의 정보제공 2절 건축구상의 조정 등 - 건축구상의 신고, 확인, 공표, 표식의 실치, 건축구상의 주지, 설명회, 의견교환회, 건축구상의 변경등, 건축구상의 절차완료, 일단의 토지의 취급, 적용제외, 권고, 공표
5장 마을만들기의 지원	1절 구민 마을만들기협정 - 구민 마을만들기협정 2절 마을만들기활동의 지원 - 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에의 조성, 마을만들기 지원단체등에의 조성,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정보제공 등,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
6장 잡칙	- 진척 상황의 평가, 위임
부칙	

출처: 東京都世田谷區(1995.3), "世田谷區街づくり條例"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방자치법상 세타가야 기본구상의 실현과 도시계획법상 지구계획안 작성에 관한 절차 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위상이 기존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의 내용에서도 마을만들기의 유도나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방침 등의 책정(도시정비방침, 지구 마을만들

기계획, 지구계획등의 안, 마을만들기 유도지침), 양호한 건축구상의 유도(대규모 토지거래행위의 신고 등, 건축구상의 조정 등), 마을만들기의 지원(구민 마을만들기협정, 마을만들기활동의 지원)등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의 추진과 관련 사항(지구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유도지구, 마을만들기 추진지구)은 일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이 "도시계획법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면서 개성이 있고 매력있는 시가지 형성을 지원하여 도쿄의 매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유형의 마을만들기 제도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마을만들기 제도는 아니나 도시 및 주거환경관련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만들기관련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도쿄도 세타가야구 협소도로확폭정비 조례(1997.3 제정), 사이타마시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조례(2008.10 제정), 삿포로시 생활환경의 확보에 관한 조례(2002.3 제정), 고베시 주환경을 지켜나가는 조례(1994.3 제정) 등이 있다. 〈표 3〉은 마을환경형 간접적 마을만들기의 예로써, 도쿄도 세타가야구 협소도로확폭정비 조례의 예이다.

〈표 3〉 마을환경개선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세타가야구 협소도로확폭정비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본칙	- 목적, 정의, 구장 책임, 건축주 등 책임, 사전협의 등, 후퇴용지 등의 공용, 정비공사 등, 조성금 및 장려금, 조성금 등의 교부결정 취소 등, 적용제외, 위임
부칙	

출처: 東京都世田谷區(1997.3), "世田谷區狹あい道路擴幅整備條例"

2) 경관형성형

이 유형은 풍경이나 경관 향상, 시가지 가로경관 향상 등 마을의 외관을 정비하여 매력있는 마을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서 경관형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 유형의 조례는 경관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다보니 조례의 내용이 경관만들기계획의 수립이나 경관사업의 시행 등 경관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 조례처럼 경관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독차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등 주체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의 예로는 도쿄도 신주쿠구 경관마을만들기조례(1991 제정, 2008.12 전면개

정),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 조례(1999.3 제정), 사이타마현 경관조례(2007.7 제정), 고베시 도시경관조례(1978.10 제정), 도쿄도 토시마구 어메니티형성조례(1993.3 제정) 등이 있다.

〈표 4〉 경관형성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도쿄도 신주쿠구 경관마을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 용어의 정의
2장 경관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등	- 경관마을만들기계획,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3장 행위규제 등	- 사전협의, 조치 요청, 신고서류 등, 특정 신고대상행위, 행위완료 신고 등, 권고 및 공표 등, 변경명령 등의 절차, 경관마을만들기계획등에의 적합
4장 경관중요건조물	-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등, 경관중요건조물 관리방법의 기준, 경관중요건조물 관리자의 변경신고 등, 경관중요건조물 멸실 또는 훼손 신고
5장 경관중요수목	- 경관중요수목 지정 등, 경관중요수목 관리방법의 기준, 경관중요수목 관리자의 변경신고 등, 경관중요수목의 멸실 또는 고사 신고
6장 경관협정	- 경관협정
7장 양호한 경관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	- 지원, 표창
8장 경관마을만들기 심의회	- 설치, 조직, 소위원회
9장 잡칙	- 규칙에의 위임
부칙	

출처: 東京都新宿區(2008.12), “新宿區景觀まちづくり條例”

〈표 5〉 경관형성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도쿄도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 목적, 정의, 구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의 책무
2장 총합적 시책의 전개	- 풍경만들기계획 수립, 시책 조정 등, 공공시설의 풍경만들기, 국가 등에 대한 요청, 도 또는 관계 구・시와의 연계,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구민 등과의 협동 기회
3장 지역풍경자산	- 지역풍경자산의 선정, 등록, 자산활용지침, 유지관리, 소유자 등의 변경, 지원 및 조성
4장 지역자산(界わい) 선언	- 지역자산(界わい)선언의 등록, 등록의 변경 및 해제, 지원 및 조성
5장 풍경만들기 활동단체 등	- 풍경만들기활동단체 등록, 지원 및 조성, 표창
6장 풍경만들기의 기준	- 풍경만들기 기준의 수립
7장 풍경만들기 중점구역	- 풍경만들기 중점구역, 풍경축, 지역자산(界わい) 형성지구
8장 행위의 규제 등	- 신고사항 등, 특정신고 대상행위, 건설행위 등에 관한 정보제공, 지도, 권고의 절차 등, 변경명령 등의 절차
9장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 위원회 등	-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위원회, 세타가야 풍경다자이너, 풍경만들기 어드바이저
10장 보칙	- 위임
부칙	

출처: 東京都世田谷區(1999.3), "世田谷區風景づくり條例"

〈표 4〉와 〈표 5〉는 경관형성형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 〈표 4〉 신주쿠구 경관마을만들기조례의 경우, 조례의 내용에서 경관마을만들기계획 등(경관형성 가이드라인), 행위규제 등, 경관주요건조물, 경관중요수목, 경관협정, 양호한 경관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 경관마을만들기 심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5〉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 조례의 경우에도 총합적 시책의 전개, 지역풍경 자산, 지역자산선언, 풍경만들기 활동단체, 풍경만들기 기준, 풍경만들기위원회 등 경관의 유도나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대부분 사업보다 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복지조성형

이 유형은 고령자나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안심하여 생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물적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 정비나 관리의 목표가 사람들이 복지 측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마을만들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6〉 복지조성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홋카이도 복지마을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목적, 정의, 도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도민의 책무
2장 복지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시책의 기본방침, 지침의 수립, 계발활동, 학습기회의 제공 등, 공공적 시설의 기준 등, 겨울철 생활환경의 정비, 이동수단 확보의 지원, 정보의 이용 등, 상담체제의 정비 등, 재해시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인재 육성 등, 기술적 조언 등, 조사・연구 등, 표창 등, 추진체제, 재정상 조치
3장 공공적 시설 등에 관한 조치	1절 공공적 시설에 관한 조치 - 정비기준, 정비기준의 준수 등, 공공적 시설의 신축 등의 신청, 지도 및 조언, 지시, 기존 공공적 시설의 적합상황의 보고 등, 인정증의 교부, 기능의 유지 등, 국가 등에 관한 특례 2절 공공적 차량 등 및 공공적 공작물에 관한 조치 - 공공적 차량 등에 관한 조치, 공공적 공작물에 관한 조치 3절 주택 및 주택주변 환경에 관한 조치 - 주택환경에 관한 조치, 주택주변 환경에 관한 조치
4장 잡칙	- 적용제외, 규칙에의 위임
부칙	

출처: 北海道(1997.10), "北海道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

이 유형의 예로는 홋카이도 복지마을만들기 조례(1997.10 제정), 삿포로시 복지 마을만들기 조례(1998.12 제정), 사이타마시 누구라도 살기좋은 복지 마을만들기 조례(2012.3 제정) 등이 있다.

〈표 6〉은 홋카이도 복지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로서, 복지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시책이나 공공적 시설, 공공적 공작물, 주택 및 주택주변 환경에 관한 조치 등 복지마을의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시설의 유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재해예방형

이 유형은 지진이나 태풍, 해일, 사면붕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마을만들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유형의 예로는 사이타마현 震災(지진재해)예방 마을만들기 조례(2002.3 제정), 도쿄도 震災(지진재해)대책 조례(2000.12 제정) 등이 있다.

〈표 7〉은 사이타마현 진재예방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진재예방에 관한 기본적 방침이나 밀집시가지 개선 및 확대 방지, 도로 등의 정비 등, 중요한 건축물의 내진성 확보 등 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나 자주방재조직의 육성 등 지역사

회에서 협동의 촉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재해예방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사이타마현 진재예방 마을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 목적, 현의 책무, 현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정촌에의 지원, 조사 및 연구결과의 공표 등, 기술적인 제안 및 시책에의 반영 등, 연차보고
2장 도시의 안전성 확보	- 도시에서 진재예방에 관한 기본적 방침 등, 밀집시가지 개선 및 확대 방지, 도로 등의 정비 등, 중요한 건축물 등의 내진성 확보, 소방수리 확보의 지원, 전기·가스 또는 통신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독물 또는 극물을 저장하는 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고층건축물 등의 방재계획, 기존건축물의 내진성 향상, 낙하대상물 등의 안전성 확보, 주택화재의 방지, 응급위험도 판정
3장 지역사회에서 협동의 촉진	- 자주방재조직의 육성, 요원호자에 대한 시책 등의 지원, 자원봉자사 등 지원활동의 환경정비, 현민 등이 조직하는 단체의 협동을 위한 지원
4장 잡칙	- 고의 징수 등과 출입조사, 위임
부칙	

출처: 埼玉縣(2002.3), "埼玉縣震災予防のまちづくり條例"

5) 안전관리형

이 유형은 자신의 마을은 자신이 지킨다는 방범 연대의식을 모토로 마을에서 범죄기회를 미리 없애서 애초부터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워 일상생활이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마을만들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유형의 예로는 홋카이도 범죄없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지역만들기 조례(2005.3 제정), 사이타마현 방범 마을만들기 조례(2004.3 제정), 사이타마시 방범 마을만들기추진조례(2006.3 제정), 효고현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조례(2006.3 제정) 등이 있다. 〈표 8〉는 안전관리형 마을만들기에 관한 효고현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조례의 예이다.

〈표 8〉은 효고현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역안정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의 수립이나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안전관리형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효고현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1장 총칙	- 기본이념, 현민의 역할, 지연단체 등의 역할, 사업자의 역할, 현의 책무, 현민 등 현 및 시정촌 상호 연계
2장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	-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 아이・고령자 등의 안전확보, 방범을 배려한 시설 관리 등의 대처, 방법을 배려한 기반 정비
3장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에의 지원	-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에의 지원, 추진계획의 수립, 지침의 수립,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추진원의 설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지역안전만들기 시책
4장 잡칙	- 보칙
부칙	

출처: 兵庫縣(2006.3), "地域安全まちづくり條例"

3. 마을만들기 제도의 내용 구성

일본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목표나 이해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책무 등으로 구성된 총칙, 실제 마을만들기 운용이나 지원과 관련된 부문, 마을만들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방향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나 마을만들기 센터의 운영 등 구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표 9〉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 마을만들기제도의 유형에 따라 동일 행정구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한 것인데, 마을만들기의 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키워드의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위계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의 방향이나 중요 건축물・시설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의 방향에 따라 세부 마을만들기의 운용이나 마을만들기 모델사업의 추진,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수단의 제공 등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9〉 일본 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조례 내용의 주요 키워드

구 분		조례내용 주요 키워드
마을환경 개선형	도쿄도	- 가구재편 마을만들기제도(가로경관 재생지구기정, 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지구계획 결정, 계획제안의 규모요건 완화, 지구정비계획), 가로경관 경관만들기제도(가로경관 중점지구 지정, 가로경관 준비협의회 결정, 가로경관 디자이너 선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안 작성, 마을만들기단체 등록, 중점지구에서 건축행위 등의 유도)
	도쿄도 세타가야구	- 마을만들기방침 등 수립(도시정비방침, 분야별정비방침, 지구마을만들기계획, 지구계획 등 안, 마을만들기유도지침), 마을만들기 추진 등(지구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유도지구, 건축행위 등의 유도, 마을만들기추진지구 지정), 양호한 건축구상의 유도(대규모 토지거래행위 신고, 건축구상의 조정 등), 마을만들기 지원(구민 마을만들기협정, 지구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만들기전문가 파견)
경관 형성형	도쿄도	- 경관계획 수립, 행위의 규제, 공공사업 경관형성지침,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등에 관한 사전협의(대규모 건축물 등 경관형성지침, 사전협의),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과 역사적 경관의 형성(도 역사적 건조물의 선정, 도선정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경관중점건조물의 지정 등, 역사적 경관형성의 지침 등), 경관협의회
	신주쿠구	- 경관마을만들기계획 수립, 경관형성가이드라인, 행위제한 등(사전협의, 특정신고대상 행위, 경관마을만들기계획 등에 적합), 경관중요건조물(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 등, 경관중요건조물 관리방법의 기준), 경관 중요수목경관중요수목의 지정 등, 경관중요수목 관리방법의 기준), 경관협정, 양호한 경관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 경관마을만들기협의회
복지 조성형	홋카이도	- 복지마을만들기 기본시책(시책의 기본방침, 지침수립, 추진체제 등), 공공적 시설 등에 관한 조치(공공적 시설, 공공적 차량 등 공공적 공작물, 주택 및 주택 주변환경)
	홋카이도 사포로시	- 복지마을만들기 기본시책(지침수립, 복지마을만들기 추진 모델사업), 공공적 시설 등에 관한 조치(공공적 시설, 공공적 차량 등 공공적 공작물, 주택 및 주택 주변환경), 삿포로시 복지마을만들기 추진회의
안전 관리형	효고현	-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 아이・고령자 등의 안전확보, 방범을 배려한 시설 관리 등의 대처, 방법을 배려한 기반 정비), 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에의 지원(지역안전마을만들기 활동에의 지원, 추진계획의 수립, 지침의 수립,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추진원의 설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지역안전만들기 시책)
	효고현 히메지시	- 안전하고 안심하는 지역사회의 형성, 안전안심추진협의회 설치,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 범죄 등 발생시의 조치

4.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이상 일본 마을만들기 운영사례를 통해 일본 마을만들기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풍경만들기, 가구재편마을만들기, 경관마을만들기, 복지마을만들기, 방범마을만들기, 방재도시만들기 등 마을만들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조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마을이 가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을만들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즉,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을의 주민이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조례의 내용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자치단체 위계간에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앞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치단체의 위상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방향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센터의 운영, 세부사업의 추진 등 구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표 10〉 마을만들기 제도 속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속에서 마을만들기의 역할
마을만들기＝도시계획	-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과 같은 개념으로서,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음
마을만들기 〈 도시계획	-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보다 작은 개념으로서,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마을만들기 〉 도시계획	-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보다 큰 개념으로서, 도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마을만들기≠도시계획	-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마을만들기가 도시계획과 전혀 별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넷째,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에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마을만들기

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계설정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제도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3]하거나 마을환경개선, 경관형성, 복지형성 등 유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내용 속에서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등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개별 마을만들기 제도와 도시계획의 관계를 보면 앞의 〈표 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1. 마을만들기 유래 및 개념

1) 마을만들기 유래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는 1970년부터 범국민적인 지역사회 개발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효시하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마을의 환경개선과 소득증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사회운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마을만들기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마을만들기 개념과 유사한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을가꾸기, 동네가꾸기, 동네만들기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대두된 배경으로는 지방자치체의 시행과 함께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운동 이후 NGO의 활동전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었는데, 국토해양부의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림수산식품부의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등(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주로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이나 재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를 전통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역할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도시정비나 개발은 그 동안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의 대표적인 수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

3) 세다가야구 "마을만들기조례(1995.3)"나 고베시 "지구계획 및 마치즈꾸리협정에 관한 조례(1981.12)" 처럼 조례 제1장 총칙(목적)에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

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뉴타운 사업의 열풍에서 보듯이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전면철거방식 위주의 도시정비나 개발이 대세를 이루어왔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지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2012년 8월 시행)하여 동법 제2조(정의)의 정비사업 유형에 종전의 전면철거방식 위주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정비사업 이외에 기존 주택이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확충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추가[4]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비사업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향후 마을만들기를 제도권 속의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마을만들기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마을만들기 개념은 아직 학술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의 정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우리나라 만들만들기 제도 속의 마을만들기 개념

마을만들기 용어	마을만들기 정의	관련 사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7 제정)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도 마을만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나 촉진지구 존치지역,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기 지원 조례 (12.8)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9.12 제정)
좋은 마을만들기	"좋은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11.5)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08.7)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함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07.10)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함	·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10.5)

출처: 서울특별시(201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2012.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2009.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경기도(2012.8),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수원시(2011.5),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2008.7),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군산시(2007.10),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진안군,(2010.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마을만들기 정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개념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 해당지역이 가지는 전통이나 특징, 자원 등을 활용함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
- 환경개선,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함

그리고 이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면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과 전문가, 민간섹터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이 가진 전통이나 특징,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마을만들기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2003년 7월 30일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최초로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2004.3.25)"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201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 1월 7일 처음 조례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2003년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재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표 12〉와 〈표 13〉은 201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현황(2013년 6월 말 현재)

구 분	조례명	제정일
서룰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2012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년 5월 27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0년 3월 1일
경기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년 8월 1일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년 12월 28일
충청남도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년 1월 7일

출처: 자치법규정비시스템(http://www.elis.go.kr/)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리

〈표 13〉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현황(2013년 6월 말 현재)

구 분	조례제정 기초자치단체	개소수
서울특별시	- 마포구(09.12), 성북구(11.12), 종로구(12.5), 중구(12.9), 용산구(12.8), 성동구(12.5), 중랑구(12.7), 강북구(12.7), 은평구(12.6), 서대문구(12.11), 양천구(12.6), 강서구(12.10), 도봉구(12.7), 구로구(12.10), 금천구(12.9), 영등포구(12.11), 강남구(12.9), 강동구(12.9), 광진구(12.11), 노원구(12.6), 송파구(12.10)	21
부산광역시	- 영도구(08.6), 북구(12.7), 동구(13.2), 사하구(13.3)	4
인천광역시	- 부평구(05.10), 연수구(12.6), 동구(12.11), 남구(13.7)	4
광주광역시	- 북구(04.3), 광산구(08.1), 남구(08.5), 서구(08.12), 동구(13.3)	5
울산광역시	- 동구(12.12), 북구(11.12)	2
강원도	- 인제군(08.6), 강릉시(12.4)	2
경기도	- 안산시(07.9), 양주시(08.5), 양평군(09.1), 수원시(10.12), 남양주시(11.4), 하남시(11.5), 오산시(12.2)	7
충청북도	- 단양군(08.6), 청주시(09.1, 12.1)	2
충청남도	- 금산군(06.12), 보령시(08.4), 아산시(13.3)	3
전라북도	- 진안군(03.7, 10.5), 군산시(07.10), 정읍시(09.12, 12.5), 익산시(12.9)	4
전라남도	- 강진군(08.1), 광양시(08.11, 13.2), 나주시(09.1), 목포시(08.6), 순천시(07.7, 11.6)	5
경상북도	- 영양군(12.5)	1
전라남도	- 거제시(08.6), 창원시(11.7, 13.3)	2

출처: 자치법규정비시스템(http://www.elis.go.kr/)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리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앞의 〈표 11〉 마을만들기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거환경개선,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례의 내용구성을 보면 〈표 16〉 및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①마을만들기 계획수립, ②마을만들기 사업지원, ③마을만들기위원회의 운영, ④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속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 등에서 제정하고 있는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등의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로써,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일반적인 마을만들기 조례(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12.31 제

정) 이외에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별도로 제정(2008.1.7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도시를 정의하고, 구청장이 이러한 안전도시만들기를 위하여 안전도시만들기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4〉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의 내용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4〉 개별 목적달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목 차	세부 내용
본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민의 권리 및 참여, 구민의 책무, 사업의 지원, 사업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수당 및 여비
부칙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2008

한편,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마을만들기 제도는 아니나 경관조례나 공공디자인조례 등 도시계획관련 제도의 틀 속에서 도시의 경관형성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령도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에 기여를 하는 간접적 마을만들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관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제도는 주로 2000년 이후 만들어지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욕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유형의 예로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2011.9 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조례(2009.4 제정), 수원시 경관조례(2009.6 제정), 마포구 도시디자인조례(2011.6 제정) 등이 있다. 〈표 15〉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의 내용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이나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경관법이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경관조례도 결국 마을만들기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경관형성을 위한 간접적 마을만들기 조례의 예(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목 차	세부 내용
본칙	- 목적,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규칙
부칙	

출처: 서울특별시(2011.9),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3. 마을만들기 제도의 내용 구성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조례의 내용구성을 보면, 〈표 16〉 및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유사한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마을만들기에 대한 목표나 이해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책무 등으로 구성된 총칙,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이나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실제 마을만들기 운용과 관련된 부문, 마을만들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 실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구성 등 크게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례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은데, 사례도시 모두 조례내용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자치단체간의 위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마을만들기 운영시 자치단체 위계간의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조례 내용구성의 예(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본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책무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 및 행정의 역할
2장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지원신청,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2장 지원계획 등 - 마을만들기지원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마을만들기협의회, 전담부서운영 등, 마을만들기전문가 지원, 사업내용, 지원사업 선정, 평가·포상, 사	2장 전북마을만들기 지원 - 기본계획수립, 연도별 지원계획수립, 지원대상사업, 마을단위발전계획수립 및 운영 등, 전라북도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수, 형성재산의 사용		업비지원 및 환수, 시·군 기준마련 및 사업운영	설치 및 운영, 도협력센터 기능, 사업비 반환, 우수마을지원 등, 평가·포상, 준용
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 -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등, 관계부서 협조, 회의록, 수당	-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 협조요청, 수당 등, 운영세칙	3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등 -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시행규칙	3장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등 -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기능, 위원회 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해촉, 다른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 종합지원센터 설치, 종합지원센터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취소, 다른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 지원센터의 설치 등,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임, 포상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출처: 서울특별시(201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2012.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2012.8),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2009.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표 17〉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조례 내용구성의 예(기초자치단체)

서울시 마포구	부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군산시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권리와 책무, 구청장 책무, 다른법령과의 관계	1장 총칙 - 목적, 정의, 시장·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이념, 주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 마을만들기 주체의 책무
2장 마을만들기 사업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비 지원신청 등,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	2장 마을만들기 사업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지원, 지원신청,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	2장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체 설치, 교육지원 등	2장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지원계획수립, 지원대상, 사업신청, 전문가지원, 사업 조정, 조사 및 보고, 예산의 반영 및 지원, 분석 및 평가, 형성재산의 사용, 포상, 준용
3장 마을만들기 위원회 - 설치, 기능, 구성, 임	3장 마을만들기 위원회 - 설치 및 기능, 구성,	3장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3장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등, 간사, 관계부서의 협조, 수당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등, 협조요청, 회의록, 수당	-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 위촉해제, 회의, 관계부서협조, 수당	-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등, 해촉, 회의 등, 수당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칙
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 설치, 기능, 관리・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 다른법령과 관계, 시행규칙	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 시행규칙	4장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지원센터설치, 지원센터 기능, 위탁관리・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해제등	
		5장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 추진주체 구성 등,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결정, 준용, 시행규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200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동구(2013.2,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2010.12),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라북도 군산시(2007.10),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표 18〉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조례 내용의 주요 키워드

구 분		조례내용 주요 키워드
서울시	본청	- 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포구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산시	본청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동구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경기도	본청	- 마을만들기지원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지원
	수원시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마을만들기사업지원, 마을만들기행정지원협의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라북도	본청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연도별지원계획, 마을만들기지원대상사업, 마을단위발전계획,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군산시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지원계획, 마을만들기지원사업,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한편,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마을만들기제도의 내용구성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던 전라북도 진안군이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진안군은 2010년 5월 기존 마을만들기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운영과 관련하여 마을간사의 채용이나 귀농귀촌의 지원 등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그린빌리지사업, 으뜸마을가꾸기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마을만들기사업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마을축제를 마을만들기의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 마을만들기제도를 매우 유연하게 구성하여 앞에서 제시된 여타 시군과 달리 선도적으로 마을만들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진안군 마을만들기 조례의 내용구성

구 분	세부 내용
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이념, 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2장 주민 참가	- 주민과 마을만들기의 관계, 18세 미만 주민의 참가권리, 주민의 책임과 의무, 주민참가 확대의 의무
3장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행정 전담부서 지정,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 설치,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4장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마을간사 채용 및 마을간사협의회 설치, 도농교류센터 설치,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
5장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수립, 관련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의 승인
6장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체계화	- 마을만들기사업 발굴, 그린빌리지사업, 으뜸마을가꾸기사업, 행정사업의 체계화와 단계설정
7장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 행정의 예산반영 및 지원, 사업신청, 사업검토 및 선정, 사업지구 관리, 전문가 지원, 분석 및 평가, 포상
8장 마을축제	-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 마을축제조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마을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지원
9장 지원 취소 등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용, 시행규칙과 지침
부칙	부칙

4.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이상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영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제도의 주요 흐름이 공공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표 16〉, 〈표 17〉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이이에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함

께 다루어지고 있어 마을만들기가 주민보다 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해 추진될 우려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는 모두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도시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마을만들기 제도는 거의 대부분 『· · · · · · 마을만들기 조례』나 『· · · · ·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형태로 운영되고 내용도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의 목표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개성있는 마을만들기를 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제도가 자치단체 위계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앞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제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의 키워드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상하위 자치단체간의 역할이 애매하다. 다만, 진안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성있는 마을만들기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있는 흐름도 보이고 있다.

넷째,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 즉,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는 앞의 마을만들기 개념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는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기존 도시정비 수단의 대체수단으로 마을만들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만들기 제도 속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Ⅳ. 마을만들기 제도 운용상의 시사점

이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이나 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시혜적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주민)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창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조례의 내용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주민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주민참여, 주민소유 건축물이나 마을소유 자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만들기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가 운영된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고, 또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에서 한국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현재의 단일 이슈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본의 마을만들기처럼 마을환경개선, 경관형성, 복지조성,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한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낙후지역인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외형적인 마을만들기의 목표 이외에 소득수준의 향상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할 수단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제도의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등 자치단체의 위계나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위계간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자치단체별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조례라는 제도에 의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래 마을만들기는 개념정의가 어려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유형이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순히 조례라는 제도에 의해서만 마을만들기를 분석하여 일본 및 한국 마을만들기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 도출이나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서 실제 사례를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9),「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장준호・김선직 편역(2010),「커뮤니티를 위한 마을만들기 개론」, 형설출판사

김용성 외(2012), 협의형 도시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7(3): 91-104.

김진경 외(2012),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7(2): 57-67.

박세훈 외(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4(3): 207-220.

송혜승 외(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3(3): 37-53.

이규선 외, (2012), 청주시 사직2동 마을만들기 단계별 특성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7(4): 145-157.

이창호・배웅규, (2007), "대학주도의 대학마을 재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42(6): 89-103.

황희연 외, (2008),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사례의 사업주제별 유형과 특성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3(6): 89-110.
국토해양부(20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2012.8),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경기도 수원시(2011.5),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2008.7),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부산광역시,(2012.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2013.2),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201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2011.9),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200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200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전라북도,(2009.1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라북도 군산시(2007.10),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라북도 진안군,(2010.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佐藤滋(1999.9), 「まちづくりの科學」, 鹿島出版會,
埼玉縣(2004.3), 「埼玉縣防犯のまちづくり推進條例」
埼玉縣(2002.3), 「埼玉縣震災予防のまちづくり條例」
埼玉縣さいたま市(2012.3), 「さいたま市誰もが安心して長生きできるまちづくり條例」
東京都(2003.3), 「東京のしゃれた街並みづくり推進條例」
東京都(2000.12), 「東京都震災對策條例」
東京都新宿區(2008.12), 「新宿區景觀まちづくり條例」
東京都世田谷區(1995.3), 「世田谷區街づくり條例」
東京都世田谷區(1999.3), 「世田谷區風景づくり條例」
東京都世田谷區(1997.3), 「世田谷區狹あい道路擴幅整備條例」
東京都豊島區(2003.3), 「豊島區街づくり推進條例」
兵庫縣(2006.3), 「地域安全まちづくり條例」
北海道(2005.3), 「北海道犯罪のない安全で安心な地域づくり條例」
北海道(1997.10), 「北海道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
北海道札幌市(1998.12), 「札幌市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

접수일(2013년 10월 18일)
수정일자(2013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9일)